	REWSH H	E 자	료	可以 互络桃 对称则于 言例 圣松 子型 什		
배포 일시	2022. 10. 25.(화)				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관	책임자	과 장	박진호 (044-201-3847)		
<총괄>	첨단자동차과	담당자	사무관	이 향(044-201-3852)		
보도일시	2022년 10월 26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エエヨハ	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5.(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		

자율차 시험운행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려요

- 26일「자율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」 발간 및 업계 간담회 개최 -
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0월 26일 **자율주행** 기술개발 편의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하여「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」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도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□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*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('16~)로,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(교통약자 보호 구간 제외)에서 운행이 가능하다.
 - *「자동차관리법」제27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전국 모든 도로 운행이 가능
 - 또한 **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** 내에서는 **유상운송 특례제도*와 결합**하여 자율주행 버스, 택시 등 **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**도 할 수 있다.
 - *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, ^①유상 여객운송, ^②유상 화물운송, ^③안전기준 특례 부여가 가능
 - 임시운행 허가건수는 제도시행 첫 해 11건(6개 기관)에 불과하였으나, 허가요건 완화 등 제도정비*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왔으며, '22년 10월 현재 주요 자동차 제작사는 물론 중소·새싹기업 등에서 개발한 자율차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운행 중(62개 기관)이다.
 - * ^①시험운전자 요건 완화 등('17.3), ^②동일 사양 자율차의 허가절차 간소화 등('18.4), ^③무인운행 허가기준 신설 및 양산 예정 자율차 허가절차 간소화 등('21.3)

< 연도별 임시운행 허가건수 >

연도	′16	′17	′18	′19	′20	′21	′22
허가건수	11	19	27	22	48	66	65(10월 현재)

↑ 「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」주요내용

- □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 기관들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임시운행 허가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되었다.
 - 특히, 최근 자율주행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새싹기업, IT회사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절차. 허가기준 및 시험방법*.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한다.
 - *「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차로유지, 전방 충돌방지,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능을 시험하여 허가
 - 그간 허가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**요건 미준수로 신청이 반려**되거나 시험에 장기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으나. 가이드라인 발표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줄어들고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----<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>-----

- ① 가이드라인 발간 배경
- ⑤ 변경사항·사고발생 보고 및 사고사례
- ②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의 목적 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시 유의사항
- ③ 임시운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류 ⑦ FAQ
- ④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방법 [참고] 임시운행 허가제도 추진경과
- □ 또한,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, 택시,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 리티 서비스 개발·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·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하였다.
 - 아울러, **안전한 시험연구 환경 조성**을 위하여 그간의 임시운행 자율차 교통사고* 발생사례와 사고원인, 사고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도 수록하였다.
 - *「자동차관리법」제27조에 따라 사고발생 시 국토부에 보고, 국토부는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필요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정조치, 운행제한 등이 가능

②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

- □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하여 자율주행 관련 기업·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다.
 -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율주행 정부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· **새싹기업**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.
 - * (일시/장소) '22.10.26(수) 13:00 /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, (참석) 국토교통부, 한국 교통안전공단, 자율주행 관련 기업·대학·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등 약 70명
- □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발표한 「모빌리티 혁신 로드맵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, 임시운행 신속 허가제*(가칭) 도입, 동일 자율주행자동차 인정범위 확대 등 임시유행허가 규제혁파를 위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 중으로.
 - * 기존 임시운행 실적 등 특정요건을 갖춘 경우 타 요건 심의를 대폭 완화하고 신고제에 준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검토
 - 간담회를 통해 직접 청취한 **애로사항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세부** 계획을 보**와**할 계획이다.
- □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"자율주행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민간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"고 강조하면서,
 - "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**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**하여 **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**시키고 **산업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**할 것"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<총괄> 첨단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 박진호(044-201-3847)
<총괄>		담당자	사무관 이 향(044-201-3852)
공동	한국교통안전공단	책임자	처 장 김시우(031-369-0401)
	자동차안전연구원	담당자	책 임 민경찬(044-369-0408)



